



제428 회국회(임시회)
제1 차 보건복지위원회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안 조정 기능 부여 〉

■ 백혜련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9678호)

2025. 8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지민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3
1.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안 조정 기능 부여	3
가. 개정안의 내용	3
나. 검토의견	4
다. 관계 기관 의견	6

I. 개요

1.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9678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백혜련의원 등 10인
- (2) 제 안 일 : 2025. 4. 9.
- (3) 회 부 일 : 2025. 4. 10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·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,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,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
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

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).

Ⅱ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안 조정 기능 부여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을 작성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‘조정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).

현행	개정안
제4조(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	제4조(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<u>종합</u> 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(이하 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	② ----- ----- <u>조정·종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	부 칙
	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나. 검토의견

□ 정부는 현행법 제4조제1항¹⁾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을 개발·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**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**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.

- 최근의 ‘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(2023~2027)’의 수립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농촌진흥청 및 질병관리청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였으며,

‘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.0 시대 구현’을 비전으로 삼아 보건의료기술 수준 향상하고, 보건안보 위기 대응 관련 백신·치료제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며, 바이오헬스 수출을 확대하는 등의 3대 목표를 제시하였음.

□ 한편 ‘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’은 현행법 제4조제2항²⁾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·작성한 ‘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’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(위원장 대통령)³⁾가 심의함으로써 확정되는데,

1)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

제4조(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) 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·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2)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

제4조(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)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(이하 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

3) 헌법

제127조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
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,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‘종합’할 때 이를 ‘조정’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보건의료기술을 진흥·육성하려는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
- 그런데,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⁴⁾에서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과 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절차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정 기능이 이미 법령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측면이 있음.

4)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」

제2조의3(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다. 관계 기관 의견

□ (보건복지부) 수용

-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(R&D) 예산 확대* 등에 따라 ‘보건의료 기술 육성정책’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각종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어야 하는바,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에서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조정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.

*‘보건의료기술 육성’ 예산: ('24) 2조 2,365억원 ⇒ ('25) 2조 5,548억원 (+14.2%)

문 의 처

02)6788-5506